

행정기관명

수신
(경유)

제목 [] 특별보존지구
[] 보존육성지구 에서의 행위허가서

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([]특별보존지구/[]보존육성지구)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.

허가번호		
신청인		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
		주소
허가대상		위치(지번)
허가 내용	구분	[]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[]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[]수목 식재 또는 벌채 []토석류 채취·적치 []도로 신설 및 포장 등 []기타()
	상세내용	
	허가기간	
허가조건		

- 행 정 사 항 -

1. 이 허가는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2. 허가를 받고 허가 행위를 착수·변경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9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(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)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착수·변경 또는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- 나.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다.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
 4.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,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.
 5.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.
-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